

대구지방법원 2023. 2. 17 선고 2022가단1283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3. 1. 20.

판결 선고2023. 2. 17.

주 문

1.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5.자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F에게 위 1.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. 12. 24. 접수 제28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E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, D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신중화

별지